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 >

■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91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추가	3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35인
2. 제안일 : 2024. 6. 18.
3. 회부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 향상 및 신뢰받는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된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 우리나라에서 인사청문회는 제15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0년 2월 16일)에 따라 처음 도입되었고, 이를 위한 절차법으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인사청문회법」(법률 제6271호)이 제정(2000년 6월 23일)되었음.

- 이 제도는 국회의 입장에서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 인지를 검증함으로써 공직후보자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통령 등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함으로써 권력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음.¹⁾

□ 현행법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²⁾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⁴⁾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별도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즉시 그 임기⁵⁾가 바로 개시

1) 국회사무처, 「국회법 해설」 (2024), 829-830.

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3)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4)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4349호)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제15조제1항 관련))】 은 위원장은 장관급, 부위원장 3인은 차관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음.

*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5)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되고, 위원 결격사유⁶⁾에 해당하는 때,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 때, 법 제17조⁷⁾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국민의 권익 향상 및 신뢰받는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국민 권익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로 상징되는 민원대표 기관으로서 다양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부패 및 공익신고 영역에서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채용비리 조사 등 조사기구로서의 역할 또한 다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커졌다고 볼 수 있음.

-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6)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7)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확대 연혁 ＞

일자	주요내용
2008. 2. 29.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통합
2011. 9. 30.	공익신고 제도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신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2016. 9.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제도 신설 - 「청탁금지법」 제정
2019. 10. 1.	다수기관복합민원 안내·상담 및 관계기관 협의 제도 신설 -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20. 4. 2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제도 신설 -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2021. 7. 27.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신설 -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2022. 5. 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 또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및 역할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과 같이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직무도 수행⁸⁾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볼 수 있어 기관장의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을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참고로,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 위원장인 유사 위원회 조직 중 방송

8)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08년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정부위원회 소관 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2012년에 각각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 대상⁹⁾으로 추가된 바 있음.

< 유사 위원회 조직 비교 >

위원회	소속	인사청문	
		실시 여부	도입 시기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	실시	2008. 2. 29.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	실시	2012. 3. 21.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실시	2012. 3. 21.
국가인권위원회	독립기관	실시	2012. 3. 21.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미실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	미실시	-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미실시	-

□ 개정안의 심사 시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커져가는 역할과 중요도,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대통령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 정도, 그리고 다른 유사 위원회 조직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은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2건의 개정안(국회법 개정안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되었고,¹⁰⁾

9) 장관급 인사 중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 :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국가교육위원장, 지방시대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고용노동부 소속), 국무조정실장, 각 국 대사

1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0590호,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0592호,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인사청문회 절차와 법체계를 고려할 때 같이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최근 추가된 인사청문 대상자의 개별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통과 시점 >

구분	인사청문 대상자	관련 조문	개정일	시행일	비고
개별법 먼저 통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2020.1.14.	2020.7.15.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	2020.8.18.	2020.8.18.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	2020.8.18.	2020.8.18.	
개별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동시 통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방송법」 제50조제2항	2014.5.28.	2014.8.29.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규정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	2014.5.28.	2014.8.29.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	2014.5.28.	2014.8.29.	
개별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동시 통과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법」 제7조제2항	2014.3.18.	2014.6.19.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규정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	2014.3.18.	2014.6.19.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	2014.3.18.	2014.6.19.	

문 의 처

02)6788-5112

참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 확대 연혁

도입연도 및 실시주체		구 분	대 상	계
도입 (2000년) ※ 「인사청문회 법」 제정 (2000. 6. 23.)	인사 청문 특위	국회 동의 대상	대법원장(헌법 제104조제1항) 헌법재판소장(헌법 제111조제4항) 국무총리(헌법 제86조) 감사원장(헌법 제98조) 대법관 13인(헌법 제104조제2항)	17인
		국회 선출 대상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	6인
소 계				23인
1차 추가 (2003년)	소관 상임 위원회	국가정보원장 · 국세청장 · 검찰총장, 경찰청장		4인
2차 추가 (2005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통령 임명 3인(*△1) (헌법 제111조제2항) * 헌법재판소장을 겸하는 경우 인사청문특위서 담당 대법원장 지명 3인(헌법 제111조제3항)	5인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위원	대통령 임명 3인(헌법 제114조제2항) 대법원장 지명 3인(헌법 제114조제2항)	6인
		국무위원	국무위원 18인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	18인
3차 추가 (2006년)		합동참모의장		1인
4차 추가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인
5차 추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4인
6차 추가 (2014년)		특별감찰관 1인		1인
7차 추가 (2016년)		한국방송공사 사장		1인
8차 추가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1인	
소 계				42인
합 계				65인

자료: 「국회법 해설」 (2024), 820.